

시설 운영 규정

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정 | 2006. 04. 14. 규정 제16호 |
| 전문개정 | 2009. 07. 13. 규정 제54호 |
| 개정 | 2011. 12. 30. 규정 제72호 |
| 개정 | 2012. 03. 12. 규정 제77호 |
| 개정 | 2013. 09. 30. 규정 제96호 |
| 개정 | 2014. 03. 18. 규정 제102호 |
| 개정 | 2021. 06. 04. 규정 제220호 |
| 개정 | 2023. 07. 04. 규정 제252호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진흥원 시설에 총괄적으로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시설”이란 진흥원이 관리·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.
2. “이용자”란 허가 또는 이용의 승인을 받고 진흥원의 시설물 및 만화도서·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.
3. “이용자 부담”이란 진흥원 시설물 및 만화도서·자료를 이용하는 자가 그 이용에 따른 대가로 지불하는 본인 부담을 말한다.

제4조(관할시설의 구분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할한다.

1. 만화박물관(만화도서관·상영관) <개정 2013. 09. 30.>
2. 만화비즈니스센터
3. 부천만화창작스튜디오
4. 웹툰융합센터 <신설 2023. 07. 04.>
5. 그 밖에 시장이 운영을 위탁한 시설 <개정 2021. 06. 04.>

제5조(시설의 관리·운영) ① 진흥원은 적절한 시설의 유지, 관리 및 이용자 편의 증대를 위하여 년초 시설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, 이용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이용의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각 시설별 운영 규칙에 따른다.

제6조(시설의 관리위탁) 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진흥원은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, 시설을 아웃소싱(외주관리)하거나 파견

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12. 30.>

제7조(이용자 부담) 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 기준은 각 시설별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이용자 부담의 면제) 제7조에 정한 이용자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면제할 수 있다.

1. 공무수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
2. 공익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
3. 진흥원의 임직원
4. 부천시 만화 문화 및 산업 진흥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부천시장이 추천한 자
<신설 2012. 03. 12.>
5. 기타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<신설 2014. 03. 18.>

제9조(시설 이용시간) 시설의 이용시간은 각 시설 별 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(변상의무) 이용자가 시설이나 비품, 만화도서·자료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로 하여금 변상토록 할 수 있다.

제11조(시설이용 거부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주취자 또는 시설의 풍기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
2.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자
3. 제10조의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아니한 자

제12조(수익금) 시설의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이용료 수입 및 수익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이사회에 정산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 (2006. 04. 14. 규정 제16호)

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9. 07. 13. 규정 제54호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1. 12. 30. 규정 제72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3. 09. 30. 규정 제96호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4. 03. 18. 규정 제102호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06. 04. 규정 제220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3. 07. 04. 규정 제252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